

(별지 서식 제1호)

출판계약서

저작자명 (소속)

도 서 명

위의 저작물을 도서로 출판함에 있어, 「저작권자(공동저작권자 대표)」 _____ 를 갑으로 하고, 「출판권자 아주대학교 출판부장」을 을로 하여, 양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
제1조(출판권의 설정) ① 갑은 위의 저작물(이하 “이 저작물”이라 한다)의 출판권을 을에게 설정한다.

② 제1항의 설정에 따라 을은 이 저작물의 복제 및 반포의 권리를 전유한다.

제2조(출판권의 유효기간)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고, 그 유효기간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만 10년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의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, 갑·을 어느 쪽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폐기의 통고가 없을 때에는 최초의 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배타적 사용) ① 갑은 계약기간 중에 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서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자비로 출판하거나 타인에게 출판하게 할 수 없다.

제4조(내용의 책임) 갑은 이 저작물의 내용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, 명예훼손 그 밖의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책임을 진다

제5조(원고 등의 제공) 갑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이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을에게 넘긴다.

제6조(원고분량·규격·발행부수) 이 저작물의 원고분량·규격·면수·발행부수는 다음과 같이 예정한다.

1. 원고 분량 : _____ 장(200자 원고지)
2. 규격·면수 :
3. 발행 부수 :

제7조(출판의 책임과 발행기일) ① 을은 이 저작물의 복제 및 반포의 책임을 진다.

② 을은 갑으로부터 원고를 최종적으로 인수한 날로부터 _____ 개월 이내에 이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·을이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비용의 부담) ① 이 저작물을 저작하는 데 드는 비용, 즉 완전한 원고가 되기까지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, 제작·판매·선전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갑이 제시하는 수정·증감에 의해서 통상의 제작비용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제9조(저작자 인격권의 존중) 을이 조판에 적합하도록 이 저작물의 내용·표현 또는 서명·제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정가·제책·부수 등) 을은 이 저작물의 정가·제책·발행부수·중판의 시기 및 선전·판매의 방법을 결정한다.

제11조(저작권 사용료)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지불한다.

1. 초판(또는 개정판 1쇄)은 발행부수에 의한 정가총액의 ____ % 또는 본 저작물의 원고 200자 원고지 1장당 _____ 원
2. 중판 이상은 발행부수에 의한 정가총액의 ____ %

제12조(저작권 사용료의 지불방법)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다.

1. 계약 후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_____원을 지불하고, 이 금액은 초판 제1쇄(또는 개정판 제1쇄) 저작권 사용료 지불시에 공제한다.
2. 출판과 동시에 _____ 부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다. 다만, 잔여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_____부를 매진하였을 때 지불한다.
3. _____ 부 이상 중판 발행시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_____ %로 조정한다.

제13조(발행부수의 확인) ① 을이 이 저작물을 도서로 출판할 때에는 갑의 검인을 붙여야 한다. 다만, 갑·을 사이에 별도의 협약이 있을 때에는 갑이 검인할 자리에 그 사유를 밝히고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인을 생략하는 경우에 을은 이 저작물을 출판할 때마다 발행부수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증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4조(증정본 등) ① 을은 이 저작물의 초판에서는 _____부씩, 중판 이후는 _____ 부씩을 갑에게 증정한다.

② 갑이 이 저작물의 구입을 원할 경우 _____부까지는 정가의 70%로 판매할 수 있다.

③ 갑은 제10조의 규정에 관계없이, 납본·증정·서평·선전·업무용 건본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초판본 _____부에 대하여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.

제15조(전집 그 밖의 편집물예의 수록)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이 이 저작물을 갑 자신 및 그 밖의 저작집·전집·선집 등에 수록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
제16조(개정판·증보판) 이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의 발행에 대하여는 갑·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7조(부차적 사용)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이 저작물이 번역·요약·연극·영화·방송·녹음·녹화 등 부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갑은 그 사용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, 을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8조(출판권 소멸 후의 반포) 을은 출판권 소멸 후에도 이 저작물 계약유효기간 중에 제작된 재고를 반포할 수 있다.

제19조(저작권 또는 출판권 양도·입질) 갑 또는 을이 이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입질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.

제20조(재해 등의 경우의 처리) 천재지변·전란·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 저작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.

1. 이 저작물이 도서로 간행되기 전에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실되었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2. 반포 중인 이 저작물의 재고 도서의 손실에 대하여는, 갑은 을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.

제21조(계약의 해제)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,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을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중요한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이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반포가 극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22조(계약내용의 변경)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삭제 그 밖의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갑·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23조(저작권법과 관례) 이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 및 국내의 관례에 따르거나, 또는 갑·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문 2부를 작성하여 갑·을이 서명·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갑(저작권자)

주소(소속) _____

성 명 _____ (인)

을(출판권자) 아주대학교 출판부장

성 명 _____ (인)